2017년도

역사 청소 용역계약 [계약특수조건]

2016. 11.



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이하 "갑"이라 한다) 역사 청소도급용역의 계약특수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용역수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정한 계약특 수조건에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 (계약기간)

과업 기간은 '17. 1. 1 ~ '17. 12. 31 (12개월)으로 한다.

제2조 (검수조서 작성 및 제출)

- ① "을"은 과업대상에 대한 과업을 완료하고 【붙임1】양식에 의거 "갑"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 1. 전문청소시에는 당해역사 전문 청소를 완료후 【붙임1】서식에 의거 "갑"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 2. "을"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방역소독 시행후 관련서류를 작성 "갑"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하며 소독필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을"은 검수조서 제출시 전월 사용 자재내역서와 익월 자재사용 계획서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검수결과 불량 판정시에는 재청소 실시후 재차 검수를 받아야하며, 재검수 불합격시에는 해당면적에 대해 감액한다.

제3조 (용역비 지급)

① "을"은 제17조에 정한바에 따라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익월에 용역비를 청



구하여야하며, "갑"은 다음 각호에 의거 금액을 확정한 후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 1. 도급금액은 매월 용역이행 완료 후 검수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 2. 1개월 미만 청소 또는 일부 용역 시행시의 용역비 지급은 다음과 같이한다.
 - : (월간 도급비/청소시행 월의 일수)×청소시행일수
- ② 제17조 2항에 의거 불량판정시 다음 각 호에 의거 용역비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1. 청소, 방역용역 감액 = 월간도급비 × 불량면적/ 해당구간 청소면적
 - 2. 전동차반복청소 감액 = 청소용역비 감액에 의함 (1양당 면적 34.45m²기준)

제4조 (저임금 방지 감독)

"을"은 "갑"과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성실성을 가지고 모범고용주가 되어야 하며 저임금 개선 "갑"의 시책에 호응키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을"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작성 시 최저 임금 수준이상으로 임금(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제5조(노무관리 및 후생복지)

- ① "을"은 용역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관련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을"은 용역원 급여 지급 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용역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 2. 건강보험가입
- 3. 고용보험 가입
- 4. 임금채권보장보험 가입
- 5. 국민연금 가입
- 6. 피복지급(피복 및 작업화)
- 7. 임금지불 확인대장 비치(저임금 방지 감독)
- ④ "을"은 용역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에서 정한 각종 보험 가입 및 피복지급 또한 저임금 이상 보장 및 확인을 위하여 "갑" 의 요구시 임금지불 확인대장을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 (종업원의 신분)

"을"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조 (포괄적 재하청 금지)

"을"은 "갑"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8조 (안전사고 및 배상책임)

- ①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②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 및 제3자(대인 및 대물)에 손해(실)을 입혔을 경우 그 손해(실)에 대해 일체의 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③ "을"은 작업전 작업요령, 안전수칙 등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제9조 (청소원에 대한 책임)

"을"은 청소 용역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직원에 대한 건강, 위생복리, 작업규율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 ① "을"은 용역착수 전까지 기존업체로부터 각종 시설 및 작업현황 등에 대한 업무인수를 확실히 받아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수 인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차기용역 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 업체에게 인계를 철저히 하여 야 하며, 인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착수지연 등)에 대하여 "갑"이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설계변경)

- ① 용역 수행중 "갑"의 기본방침 변경(과업의 추가 및 특별과업의 수행, 과업대상범위 또는 작업의 삭제 또는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갑"은 "을"과 합의하에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 ② "을"은 용역수행 중 과업량 증가 등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일시정지)

"갑"은 "을"의 용역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통상적인 과업수행을 통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제 해소시 까지 일시정지 시킬수 있다.

제13조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갑"은 "을"이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시정 : 청소품질 및 접객서비스 미흡시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 시행
- 2. 주의 : 시정 요구 미이행 시 및 계약 내용 위반 시 서면에 의하여 시행한다.
- 3. 경고 : 주의 3회이상 누적시 및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계약내용 위반시 서면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 전부 또는 일부 해지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민, 형사상 및 행정 일체의 보상 및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제13조 제1항의 경고 3회 이상 누적되어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때
 - 2. "을"이 당해 연도 도급내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3. 제①항 각 호외 기타 계약위반에 대하여 "갑"이 해소 노력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저임금(정부가 고시하는 당해 년도 최저임금 위반 등)지급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을"의 노사분규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업무를 수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을"이 제3자에게 과업담당 업무를 하도급하였을 때
 - 6. "갑"의 시설물 손상 또는 미화원 안전에 유해한 청소용품 사용으로 민원야기 또는 관련기관(감사 등)에 적발된 경우
- ③ "갑" 또는 "을"의 경영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약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계약 만료 전이라도 상호에게 3개월 전 서면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제14조 (용역업체 관리)

"갑"은 "을"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15조 (과업이행요청서의 해석 및 분쟁)

이 과업이행요청서의 각 조항 및 관련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의문사항은 "갑", "을"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제16조 (이행실태 평가)

- ① "갑"은 "을"의 용역수행 기간 중 이행 실태에 대해 당년 12월에 평가를 하여 경고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세부 평가기준은 청소품질 목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점수화하여 평가하되 세부사항은 "갑"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기밀의 유지)

"갑"과"을"은 본 계약체결 및 시행과정에서 알게된 상대방의 기밀사항 일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기타사항)

-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 의한 업무협의 등 통상적이고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② 청소원은 청소작업 중 또는 역사 순회 중에 이상한 물건이나 위험물 또는 위생설비 고장 발견시 즉시 관리역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 ③ 본 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이 과업이행요청서상에 명시된 내용과 상이하거나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붙임 1」

역사청소 검수조서(총괄)

	일상청소					전문반 청소										
구분	쓸기	실 쓸기	화장실 물청소	계단 쓸기	요청 사항 세정	육교 외부 계단 물청소	기계실 왁스	PSD (유리/ 선로) 닦기/	대합실 승강장 기계세정	내부계 단 물청소	방제실 기능실 왁스	환기구 세정	E/L 외부유리 캐노퍼 세정	선로 역사 내부 방역	시설물 E/S벽면 요청사항 세정작업	검사 결과
기준	등 2회/일	등 2회/일	등 2회/일	등 2회/일	작업 필요시	1회/분	작업 2회/년	쓸기 6회/년	6회/년	1회/분	작업 1회/분기	작업 1회/분기	작업 1회/분기	소독 9회/년	필요시	
횟수						7]				7]	,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역별 청소상태 및 사정에 따라 청소실시 횟수 및 종류의 증감으로 효율적인 청소를 실시한다. 역사청소 실시사항을 위와같이 검수함.

년 월

관리역장

(인)





『부산-김해경전철 전동차 청소용역 』 **계약특수조건**

2016. 11.



(기술운영실)

전동차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이하 "갑" 또는 "감독자"라 한다.) 전동차 청소용역의 과업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수행자(이하 "을" 또는 "수급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전동차 청소용역에 관한 적정한 용역수행 과업을 정하여 전동차의 청결한 유지관리 및 방역소독으로 부산김해경전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대상 및 계약기간)

"을"이 시행해야 할 청소의 대상 및 범위는 붙임 "전동차 청소용역 과 업내용서"와 같다.

- 1. 계약기간은 2017.01.01부터 2017.12.31(12개월)까지로 한다.
- 2.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차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을"은 일정기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예정물량)

청소 종류별	예정물량(편성)	비고
소 청 소	16,032	입고시
중 청 소	2,496	주 1 회
대 청 소	300	월 1 회
방역소독	225	년 9 회

제4조(물량 조정)

① 제3조의 전동차 청소물량은 예정물량으로써 전동차 운행계획(DIA) 및 검사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시행물량이 예정물량보다 감소되거나 증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청소물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실제시행한 물량으로 조정된 것으로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①항 이외에도 "갑"은 비정기적인 특별청소 등 필요한 경우 예정물 량을 초과하여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 ① 계약상의 청소물량은 예정물량이므로 실제 청소 시행 후 "갑"의 IOMS(통합운영정보시스템)상의 등록된 물량(편성)에 대하여 하기 적용 기준에 의거 예정물량대비 계약된 금액을 월별 정산한다.
- 대가지급 적용기준

달성 목표	대가지급	비고
110% 이상	당해월 청소대가 총액의 2%이내 인센 티브	
95%~110%	100%지급	
95% 이하	당해월 청소대가 총액의 3%이내 패널티	"갑"의 전동차 운용상 부 득이한 경우로 인해 물량 축소분은 제외함

- ② "을" 은 전동차 청소의 월별 시행실적에 대한 대가지급을 다음달 5일 까지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③ "갑"은 대금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갑"의 회계규정에 정하는 기일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 ④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최우선으로 사용하여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업무 착수 및 시행)

- ① 용역업무 착수는 "갑"의 전동차 운용계획에 의거 시행하되 "갑"의 착수요구에 따라 시행한다.
- ② "을"은 본 업무 계약업무 시행과 관련하여 업무계획서를 용역업무 수행 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 2항에 대한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인력운영계획(인력확보 및 배치계획)
- 2. 세부 청소계획 수립, 작업, 관리에 대한 사항
- 3. 소요물품(장비포함) 확보 및 사용계획
- 4. 법정 및 자체안전 교육계획
- 5. 긴급(위급) 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등
- ④ 업무계획서 및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신기술 도입 등으로 업무개선 또는 변경이 필요시 적극 추진하되 사전에 "갑"과 혐의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대리인 권리와 의무)

- ① "을"은 청소업무 착수 전에 청소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갑"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때 또한 같다.
- ② "을"이 선임한 청소책임자는 계약업무 이행에 있어 다음의 각호의 해당하는 임무를 맡게 하여야 한다.
- 1. "을"의 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등 작업상의 지휘명령
- 2.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갑"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 3. "갑"의 계약서에 따른 주문사항의 업무처리
- 4. "을"의 근로자의 규율·질서유지 및 기타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시설물의 사용)

- ① "갑"은 효율적인 전동차 청소작업 수행을 위하여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을"에게 사무실, 창고, 대기실, 조명 및 작업전력, 용수, 기설치된 냉·난방 등을 제공한다. 단, 집기 및 비품일체는 "을"이 준비하여야한다.
- ② 청소작업에 필요한 시설물 및 부대설비는 현재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을"이 "갑"에게 사용요청을 한 후 이를 승인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사용중인 시설물 개선, 증설 등과 승객의 안전과 "을"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것은 "을"이 부담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에너지 절감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 ①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교육 등 예방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전동차청소작업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지며 화재, 기타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구류를 지급하고 용역업무 수행 시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을"의 미화원은 차량기지 내 선로를 무단횡단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 ④ "을"은 당일 업무수행 전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을"은 작업 및 휴식장소 등을 "갑"에게 요청하여 지정한 장소에서만 작업 및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 ⑥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 낙하 및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⑦ 청소 작업시 전동차가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차 후 승·하차하여 야 한다.
- ⑧ "을"은 용역업무 수행에 있어 상기 1~7항 및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또는 이행치 아니하여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 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 ⑩ "을"은 작업도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 ① "을" 및 "을"의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발생한 "갑"의 운수수입 등 손해금에 대해 "을"은 배상 책임을 진다.

제10조(노무관리 및 후생복지)

- ① "을"은 용역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관련 법령상의 책임을 진다.
- ② "을" 은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책임은 "을" 에게 있다.
- ③ "을"은 "갑"과 무관한 "을" 내부의 경영 및 노사문제 등으로 "을"의 종업원이 "갑"을 상대로 한 항의 및 집단농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부당한 행위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위 ③항의 사유로 "갑"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시설점거 등 불법행위 발생시 당사자들에게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⑤ 도급계약은 경영권, 인사권 등이 독립되어 "을"이 독립적으로 시행하며, "갑"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시 "을"은 "갑"에게 시정요구를 할수 있다.
- ⑥ 종업원에 대한 임금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⑦ "을"은 도급계약 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분기별 임금지급명세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을"은 용역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 2. 건강보험가입
- 3. 노인장기요양보험
- 4. 임금채권보장보험 가입
- 5. 고용보험 가입
- 6. 국민연금
- 7. 피복지급(피복 및 작업화)
- 8. 건강진단실시

제11조(노동법상의 책임)

"을"은 전동차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작업환경측정 및 보호장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등 근로자 권익 및 보호를 위한 법령상의 책임을 지고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복장 및 용모)

- ① "을"은 수탁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갑"의 이용승객에게 불쾌감이 없도록 자체 종사원 복무규정을 제정, 종사원으로 하여금 작업복 착용 및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종사원이 고객응대시 항상 단정한 복장, 두발 및 용모 등 바른 품행으로 친절한 접객서비스로 고객에게 응대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을"은 "갑"의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청소용역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시킬 수 없다.

제14조(계약조건 변경)

- ① "갑"의 용역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적 및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갑" 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한다.

제15조(인수인계)

본 용역을 수급한 계약자와 전회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소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당 공사의 용역과업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지사항)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갑"의 전동차 운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2. 사전 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 3. 경전철 이용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 4. 전동차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금품을 "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 5. 전동차 내·외부의 각종 기기에 충격을 주거나 이물질 등을 투입하여 손상케 하는 행위
- 6. 차량기지 내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 7.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기지 내 시설·설비현황 및 경영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8. 작업장 내 청소용품 등을 방치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 9.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갑"을 중상모략 비방하여 "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제17조(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갑"은 "을"이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시정:청소품질 및 접객서비스 미흡시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 시행
- 2. 주의:시정 요구 미이행시 및 계약내용 위반시 서면에 의하여 시행한다.
- 3. 경고:주의 3회이상 누적시 및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계약 위반시 서면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8조(계약해지)

-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최고 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갑" 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을" 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 제17조 1호의 경고3회 이상 누적되어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소용역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3. "을"의 노사분규 등 내부사정으로 "갑"에게 업무방해 및 전동차 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② 계약 당사자간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갑"과 "을" 쌍방이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갑"이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갑"은 청소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을"은 계속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9조(조문의 해석)

계약서의 각 조항 및 기타 사항에 대한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 "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0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을 신의와 성실로서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차량기지 청소(방역)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 (용역업무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장소에 사전 배치하여 용역업무 인수인계 및 계약기간 동안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청소원의 고용승계)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중인 인원 전체(청소반장 포함 총4명)의 고용을 변동없이 승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임의 파견, 교체시킬 수 없다.(자진사퇴 제외)

제3조 (청소원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전 종업원의 건강, 신원, 풍기 및 작업 규율의 유지,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4조(현장대리인 권리와 의무)

- ① 계약상대자는 청소업무 착수 전에 청소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때 또한 같다.
- ②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청소책임자는 계약업무 이행에 있어 다음의 각호의 해당하는 임무를 맡게 하여야 한다.
- 1.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등 작업상의 지휘명령
- 2.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계약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 3. 계약자의 계약서에 따른 주문사항의 업무처리
- 4.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규율·질서유지 및 기타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결원 보충)

계약상대자는 종업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 계약이 해외 차질이 없어야 한다.

제6조 (관계법령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원 급여 지급 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 2. 건강보험가입
 - 3. 고용보험 가입
 - 4. 임금채권보장보험 가입
 - 5. 국민연금 가입
 - 6. 피복지급(피복 및 작업화)
 - 7. 임금지불 확인대장 비치(저임금 방지 감독)
-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에서 정한 각종 보험 가입 및 피복지급 또한 저임금 이상 보장 및 확인을 위하여 계약자의 요구시 임금지불 확인대장을 제출하여야한다.

제7조 (적정임금의 보장)

-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계약담당직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정가격 산출내역을 기초로 한 직접노무비는 원가계산상의 금액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이하로 임의 감액 조치할 수 없다.
- ②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종업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계약 내역서상 임금에 대한 지급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증거서류열람 또는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였을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월 지급하는 용역비에서 미지급 임금만큼 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 ④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용역업체 관리)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 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9조 (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전까지 기존업체로부터 각종 시설 및 작업현황 등에 대한 업무인수를 확실히 받아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기용역 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 업체에게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착수지연등)에 대하여 계약자가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결원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급)

청소용역 인원에 결원(결근포함)이 있을 때에는 월 용역비 지급시 결원(결근 포함)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감하고 지급한다.

제11조 (계약기간 연장)

이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는 상호협의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